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07.06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.06.12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9.06.16.
- 다. 상정일자 :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(2009.07.06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이 영 복 주민생활지원과장

가. 제안이유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시행규칙(2008. 11. 5)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(실무)협의체 구성위원 상한 규정이 확대됨에 따라, 우리구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.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위원 상한선 확대(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)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시행규칙 제1조의 개정에 따라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(실무)협의체 구성위원 상한선을 20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확대

2.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수의 상한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(2008년 11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)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, 띄어쓰기 및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위원 수를 개정안과 같이 확대할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강화 및 민간복지기관들의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